

14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이석원
서 기 이양수

1. 조직

- 위원장 : 이석원
- 회 계 : 심요섭
- 서 기 : 이양수
- 위 원 : 양병국 이정식

2. 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9. 11. 29(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이석원 목사, 서기: 이양수 목사, 회계: 심요섭 장로
 - ② 회의 일정과 워크숍 일시 장소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 6. 8(월) 11:00
- ☞ 장 소 : 대전 롯데시티호텔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니 5명 중 4명이 출석하다.
 - ② 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아래와 같이 시행세칙을 별첨 제정안으로 1차 결의하다.
 - ④ 차기회의 일정은 7월 17일(금) 오후 12:00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0. 7. 17(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2장 5조 7항을 추가하기로 하다.
· 동일한 사건을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할 경우 총회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간주하다.
 - ② 3장 11조 1항 '2년으로 정한다'를 '3년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다.
 - ③ 5장 16조 1항 '2년으로 정한다'를 '3년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다.
 - ④ 차기 모임을 7월 28일(화), 30일(목) 양일 중 정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7. 30(목) 11:00

☞ 장 소 : 새로남교회

☞ 결의사항

- ① 4조 6항 권징(책벌)을 삭제하기로 하다.
- ② 11조 1항 징계결정일로부터 -> 소제기일로부터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③ 11조 1항, 2항 3년을 -> 2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④ 14조 2항 패소자의 ->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⑤ 14조 2항 징계할 수 있다 -> 징계하되 다음 각호 절차를 따른다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⑥ 2항 하위 각호를 1, 2, 3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⑦ 16조 1항 3년 -> 2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⑧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 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로 변경하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총회결의 이행 관련

가. 사법고소자 관련

- 서부산노회장 김영길 씨가 현의한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해 총회자를 총회 결의대로 치리 현의의 건과

나. 사법 소송대응 관련

- 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현의한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 법에 고소할시 사안(임원회 심의)에 따라 공무상 발생이라고 판단시 소송대응비용(변호사 선임 및 승소비)등은 총회소송비 계정에서 총당기로 현의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현의한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하여 패소한 노회 및 개인은 관련 소송비와 손실비용(실비개념)을 총회가 법적(소액) 청구기로 하고, 이를 이행 않을 시 법적조치 외에도 해노회(개인포함)는 3년간 총대천서제한 및 총회공직도 정지(발생시점기준)기로 한다. 단, 개인이 행한 부분도 상기 내용과 같이 하며 해노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현의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윤삼중 씨가 현의한 총회(임원 포함) 상대로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자는 모든 공직(총회, 노회의 모든 공직, 당회장권, 목사장로의 직)을 5년간 정직하고 총회임원의 경우 그 사건 발생비용을 사건 종결 시까지 총회가 부담 현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현의한 총회 상대 사회법정 고소 패소시, 소송비 및 기타 비용 배상하며, 어길시 3년간 총대천서 제한하고, 총회내 모든 공직 제외 현의의 건과

다. 사회법정 소송비용 관련

- 평양제일노회장 임계빈 씨가 현의한 총회장 직무 외에 총회장 개인의 고소, 고발로 인한 법무비(변호사비) 사용 금지에 관한 현의의 건은 사법고소자, 사법 소송대응 및 사회법정 소송 비용 관련과 총회임원회에서 이첩한 건을 병합하여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서(보고서 147쪽)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하기로 가결하다

2.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보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은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 준다.

제4조 (정의)

-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치리회의 재판·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 ② 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제14조 (패소시)

-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

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별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별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효하므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별된 징계는 무효므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